

#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3
----------	----

제출년월일 : 1998년 9월 5일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 일선현장에서 청소년 건전생활 지도 및 유해환경 정화등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지도활동을 위해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위촉 절차 등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 2. 주요골자

가.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을 규정함(안제2조, 제3조)

나.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를 규정함 (안제4조1항)

-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
-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및 지원 활동등

다. 지도위원은 임무수행중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토록 규정함.(안제4조2항)

라. 군수는 지도위원의 임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제7조)

마. 지도위원의 효율적 지도활동과 상호협력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 할 수 있도록 군·읍면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규정할 수 있음(안 제9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제22조

나. 도청년 82551-177('96. 5. 4)호 준칙

다. 입법예고 : '97. 3. 8 ~ 3. 28(20일간)

라.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마. 평창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

- 청소년육성법 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89. 7. 3)
- 청소년육성법 ⇒ 청소년기본법으로 개정 ('95. 12)

##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지도위원은 군수가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등.

②지도위원은 그 직무수행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위원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지역의 특수성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 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 군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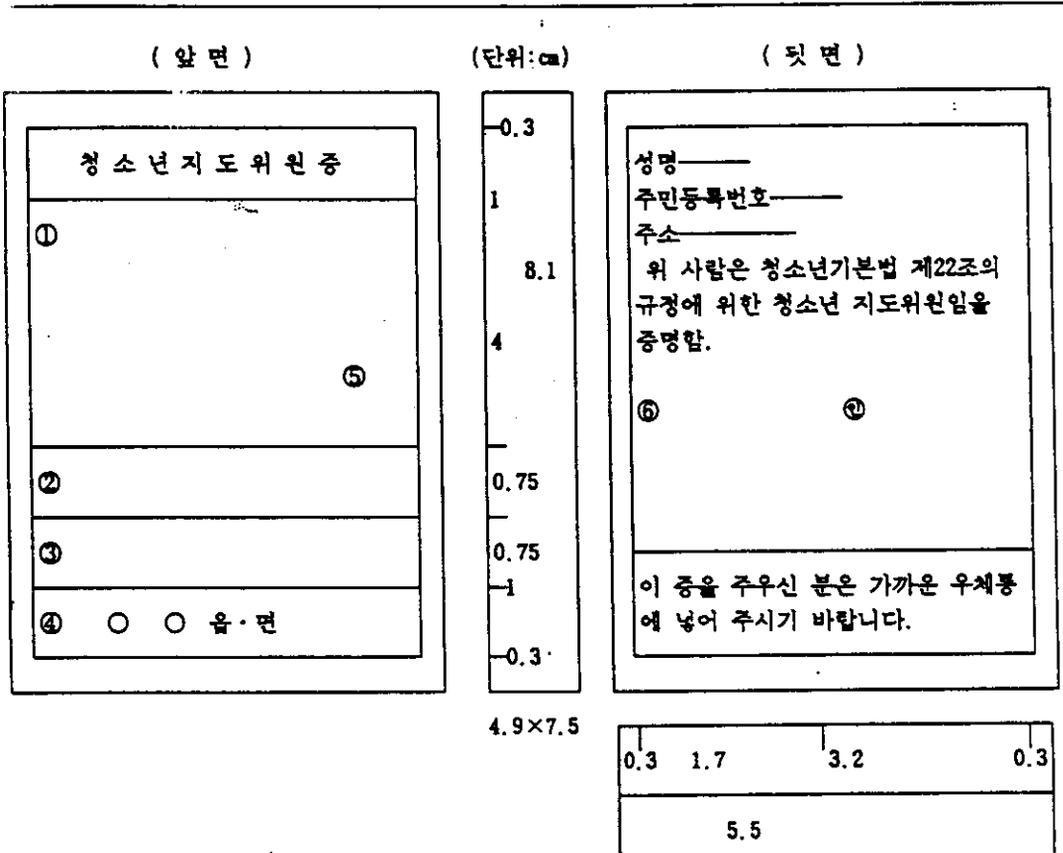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창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제6조관련)**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 ① 사진(4.9cm×4cm)
-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 ③ 성명
- ④ 소속기관명
-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 ⑥ 발급기관장의 명의 및 직인

## 관계 법령 발췌서

### □ 청소년기본법 제22조(청소년지도위원)

-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청소년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세계로 가는 청소년 다가오는 밝은 미래"

강 원 도

200-700 강원 춘천 봉의 15/TEL(0361-57-5101), FAX(0361-50-2442)

담당 최 승 학

문서번호 청년 82551 - 6177

시행일자 1996. 5. 4. (년)

거 침

받는곳 받는곳 참조

참 조

제 목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통보

선결	한수	최승학	지		
접	일자 시간	1996. 5. 08	결재·공람	부준수	2차
수	번호	한수		차장	부
처리과	사회진흥과				
담당자	[인]			제장	2차

청소년기본법 개정('95. 12.29)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야 할 조례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표준안을 작성 통보하오니, 조례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대상 조례

- 지방청소년 위원회 성. 운영(법 제13조 관련)
- 지방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운영(법 제22조 관련)

나. 시행시기 : '96. 6. 30(기본법 상)

- 붙 임 : 1. 조례 표준(안) 7 부.  
2. 청소년기본법. 령. 시행규칙 개정(안) 9 부.-끝.

강 원 도 지

받는곳 : 더(1 ~ 18)



"천혜사원 우리평창, 함께가꿀 미래의땅"  
**평 창 군**

우 232-8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 (0374) 30-2341 / 전송 (0374) 33-6356  
 처리부서 : 복지와 여성복지계 (본청 1층) 계장 : 홍금숙, 담당 : 조선희

문서번호 복지 82510 - 489

시행일자 1997. 3. 6.

(제 1 안)

받음 기획감사실장

참조 법무통계계장

취급		군 수
보존	년	부경자
부군수		
과 장	전 결	
기안	조 선희	여성복지계장 홍금숙 협조

제목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군보공고의뢰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보에 공고 의뢰합니다.

붙임 :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제 2 안)

받음 : 받는곳 참조

제목 :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니 공고후 의견 제출이 있는 읍·면은 1997년 3월 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 1부. 끝.

**평 창 군 수**

받는곳 : 도 (1 ~ 8) 평창군교육장, 평창경찰서장

##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년 3월 일

평 창 군 수 김 용 옥 인

### 1. 제정이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 2. 주요내용

○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을 규정함. (안 제2조, 제3조)

○ 청소년 지도위원의 임무를 규정함. (안제4조)

-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
-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및 지원활동등

○ 지도위원은 임무수행중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토록 규정함.

○ 군수는 지도위원의 임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안제7조)

○ 지도위원의 효율적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군·읍면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규정할수 있음.

3.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97. 3. 2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 30-2341)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